

법률문장론

Legal Writing Guide

법무법인(유) 화우 총서 |

법무법인(유) 화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아셈타워
18, 19, 22, 23, 34층 우)135-798

Tel: 02-6003-7000

Fax: 02-6003-7800

E-mail: hwawoo@hwawoo.com

목 차

I. 일반론

- 3** 1. 법률문서 작성의 4단계
- 5** 2. 좋은 서면과 나쁜 서면
- 6** 3. 좋은 서면을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수칙

II. 문장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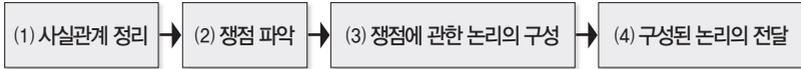
- 9** 1. 유의사항
 - 24** 2. 좋은 문장과 나쁜 문장

 - 28** 별지 1 -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거나 어색한 표현
 - 35** 별지 2 - 올바른 띄어쓰기 용례
 - 38** 별지 3 - 법률문서 작성예(준비서면, 판결문)
-

I. 일반론

1. 법률문서 작성의 4단계

모든 법률문서는 아래의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사실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실함과 꼼꼼함이 요구된다.

‘자료 속에 답이 있다’, ‘당사자의 행동에, 말에, 태도에 답이 있다’는 것이 항상 간직하여야 할 명제이다. 당사자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예단을 갖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예단으로 의뢰인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소홀히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과정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단계에서의 easy going은 절대 금물이다. 사실인정의 세계는 넓고 깊다.

(2) 쟁점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사고능력(legal mind)이 요구된다.

법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 것은 법조인 모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사명이다. 법적인 사고능력은 법리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밑바탕 되어야 하므로 이를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면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3) 쟁점에 관한 논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치열한 사고의 숙성과정이 필요하다.

개개의 법 조문은 사회생활을 고도로 압축한 논리적 결정체이다. 이와 같은 고도의 압축을 해제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응한 올바른 법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는 치밀한 논리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가능한 모든 논리를 전부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참고문헌과 판례 등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판례를 참조할 경우 판례에서 다른 사안과 검토사안과의 차이점을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쟁점은 비슷하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참고하여 선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급할수록 천천히 다져가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법률상 분쟁은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에는 대부분 비약이나 모순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상대방 서면이나 상대방 논리를 수용한 판결문을 대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4) 구성된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사고의 숙성작업과 퇴고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있으므로 항상 설득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서작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문서작성의 취지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된 단어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어떠한 설명을 보태거나 비유와 예시를 활용할 것인가하는 선택 - 배열 - 확장 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각 단계마다 구성된 논리를 상대방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한 배치와 적절한 어휘의 구사력 등 올바른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2. 좋은 서면과 나쁜 서면

가. 좋은 서면

- (1)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 (2) 이를 논리적으로 잘 분석, 정리하고
- (3) 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 (4) 그 내용을 문법에 맞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서면
표현은 정확하고(correct), 간결(concise), 명료하며(clear), 격조가
있어야 한다(courteous).

나. 나쁜 서면

- (1) 요건사실이나 쟁점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누락한 서면
- (2)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왜곡한 서면
- (3) 쟁점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거나 비논리적인 서면
- (4) 쟁점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장황하거나 중복되고 논리를 복잡하게 표
현한 서면

(1)의 경우는 기록을 소홀히 보았거나 쟁점 파악능력이 낮은 데서 기인된다.

(2)의 경우 역시 기록을 소홀히 보는 한편 손쉬운 추론이나 애매한 기억 등에 의존하여 사안을 쉽게 단정한 경우이다. 불성실함의 표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의한 교정 가능성이 낫다는 점에서 (1)보다 더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4)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부족하거나 혹은 이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충분한 사고의 숙성과정을 통하여 핵심적인 요건 사실은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 반면 지속적인 퇴고작업을 통하여 군더더기는 과감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좋은 서면을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수칙

가. 항상 생각하고 수시로 메모할 것

귀찮다고 메모를 안 해 두면 뒤에 가서 손해 본다.

나. 한 번 더 찾아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

모든 승부는 바로 이 ‘한 번 더, 조금 더’에서 갈라지기 마련이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추하라. 성공을 위해서는 완성을 향한 매니아적 집착이 필요하다. 적절한 한 가지 비유를 찾기 위하여 온 밤을 지새울 수도 있다.

다. 논리의 비약이 있는지 정밀하게 점검할 것

사실관계와 법리를 장황히 적으면서 정작 분쟁의 핵심부분을 슬쩍 넘어가는 식은 곤란하다. 분쟁의 핵심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과정임을 명심하라.

라. 쟁점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적인 추론과정은 간명하게 정리할 것

스스로에게 결론에 도달하는데 필요하였다고 하여 남을 이해시키는데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에 교과서적인 법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의뢰인에게 주는 의견서에 의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적는 것 등은 불필요하다.

독자의 불필요한 노고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친절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마. 지속적인 퇴고작업을 통하여 문장을 다듬을 것

⇨ 문장 표현에 관하여는 아래 Ⅱ항 참조

바. 제목을 잘 활용할 것

제목에서 쟁점 내지는 주장의 요지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하며, 쟁점이 여럿이거나 복잡한 경우 목차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 글머리에 미리 요점을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생각해 볼 것

전체적인 사실관계나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요점을 간략하게 적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읽는 사람이 기술된 내용이 왜 필요한 것인지 결론까지 가서야 알게 되면 중간에 읽은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되지 않는다. 제목과의 역할분담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 법리 등에 관한 복잡한 설명은 쉬운 비유를 찾아낼 것

쉬운 비유 하나가 문장 전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키 포인트가 된다. 비유는 개념의 배열 내지는 확장을 위한 적절한 방법의 하나이다.

자. 도표의 활용과 각주, 괄호의 사용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표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전달에 효과적인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표는 사안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사안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

괄호와 각주는 법령이나 출처의 인용 등과 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되도록 본문을 이용한다.

차. 문장의 리듬을 생각할 것

우주에 가득한 리듬, 문장도 숨을 쉬어야 한다.¹⁾

되도록 짧은 문장 중심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차근차근 접근한다.

소리를 내어 읽어 보고 운율을 느낄 것.

“가장 쉬운 일은 쉬운 내용을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

- 쇼펜하우어의 ‘문장론’ -

1 고종주, 재판의 법리와 현실(법문사, 2011), 138면에서 인용함.

II. 문장의 표현²⁾

1. 유의사항

법률문장의 표현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주어 + 술어의 형태로, 명사형이 아닌 동사 형으로 표현할 것

√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관련된 사건 또는 현상에 관하여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를 전개한다. 사물주어, 명사중심의 구문은 영어식 표현이다.

- 차들이 시속 10킬로미터로 서서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 차들이 시속 10킬로미터로(천천히) 가고 있다.
-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파괴를 낳는다. ⇨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자연이 파괴된다.
- 피고들이 현지에서 실제 측량한 결과가 당연히 항공사진이나 도면의 결과 보다 정확성에서 우수하므로 ⇨ --- 정확하므로

나. 주어, 술어의 위치와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것

√ 원칙적인 배열순서: 주어 - 일시 - 상대방 - 목적물 - 행위

- 원고는 2011.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 주어와 술어는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형태가 어긋나서도 안 된다.

- 나는 광철이가 수남이가 순이가 그 때 거기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2 이하 예시문장은, 고종주, 앞의 책과 장하늘, “글 고치기 전략”(다산초당, 2009), 이성복, ‘쉬운 문장 좋은 글,(세창미디어, 2003), 김상태, ‘글쓰기의 오류분석.(학고방, 2008) 등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개별인용 표시는 생략하였다.

증언한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 순이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말을 수남이가 들었다고 광철이가 증언한 것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 요즘 젊은이들을 보고 느끼는 것은 웃어른에 대하여 예의가 없다.

⇒ 요즘 젊은이를 보고 느끼는 것은 웃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 관형어, 부사의 위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형어와 부사가 함께 있거나 관형어 뒤에 명사가 붙는 경우 표현의 애매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식어는 가급적 피수식어 앞에 놓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쉼표를 사용한다.

○ 이 책과 다른 책을 다오.

○ 나는 더욱 큰 떡을 원한다.

○ 가짜 휴대폰 증정권

○ 결코 인생은 허무하다는 논리엔 수긍할 수 없다.

⇒ 결코, 인생은 허무하다는 논리엔 수긍할 수 없다.

√ 대귀적 표현의 경우 각별히 표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³⁾

○ 마지막으로 건강의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과 소유욕이 없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건강의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과 낙천적인 ‘무소유’에 있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건강의 비결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소유욕을 버리는 데 있다.

○ ‘청렴’여부는 다음 회에서 다루고, 유아독존이란 면에서 000는 정말

3 이와 같은 대귀적 표현을 병치문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장하늘, “글 고치기 전략” 다산초당 132쪽 이하. 아래의 예문들은 위 책에서 인용하였다.

한 방울 권력의 누수도 용납지 않는 절대 권력자였다.

⇒ ‘청렴’여부는 다음 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권력의 누수’를 짚어 본다. 유아독존 ~ 000는 정말 한 방울의 누수도 ~ 앞의 문장에서는 ‘다루고’의 대귀적 표현이 사라졌다.

○ 크로아상은 중세 기독교가 이슬람교도를 물리치고 축하하면서 만든 빵
⇒ ~ 물리치고 그 사건을 축하하면서 만든 빵
원문은 지나친 생략으로 어법에 어긋나는 글이 되었다.

○ 대법원장은 정치적 혼란과 격동기에는 정치권의 외압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자리이다.

⇒ 정치적 혼란기와 격동기에는, 혹은 정치적 혼란의 격동기에는

○ 맑고 푸른 산과 강을 가꾸자

⇒ 맑고 푸른 강과 산으로 가꾸자.

⇒ 맑고 푸르게 강과 산을 가꾸자.

대귀적 표현의 경우, (1) 맞세우는 문장의 합류점을 분명히 하고, (2) 같은 품사를 쓰며, (3) 길이를 비슷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또한, 각각의 표현으로 독립된 문장이 가능하여야 한다.⁴⁾

√ 수식어는 너무 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식어가 여러 개 나올 경우, (1) 긴 것을 먼저, (2) 수식어절을 수식어구보다 먼저, (3) 중요한 것을 먼저, (4) 붙임성이 강한 것을 먼저 배열한다.⁵⁾

4 장하늘, 앞의 책 187쪽

5 장하늘, 앞의 책 187쪽

다. 영어, 일본어와 같은 외국어 투 표현을 삼갈 것

피동문, 사동문, 어려운 수사법(도치법, 반어법 따위), 관계대명사 투의 문장을 되도록 줄일 것. 우리말은 주어가 숨는 경우는 있으나 사동이나 피동은 기본어법에 맞지 않는다.

피동표현을 쓰면, (1) 완곡하고 우회적이 되고, (2) 문장이 길어지고 느슨해지며, (3) 소극적 표현으로 글의 힘이 약해 지고, (4) 번역체 문장이 되는 단점이 있다. 다만, 객관적 묘사에 때로 유효하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1.1-다>참조

라. 표현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일 것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은 증명수단이 될 수 없다. 감정적인 표현을 삼갈 것. 사고는 치열하게 하되 표현은 객관적이고 온유하게 하여야 한다(溫柔敦厚). 특히 의견과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자신감 없는 표현, 느슨한 표현, 맥 빠진 표현을 삼갈 것

법률문장에는 작성한 사람의 힘이 느껴져야 한다.

특히 문장의 끝을 분명하게 맺어야 하며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귀사가 멸실된 화물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그 지급한

운임 상당액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임지급이 확정된 것을 기초로 하는 경우 밀줄부분 불필요.

○ 본건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석하여야 합니다. 해석됩니다.

○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이해하기 쉽게 쓸 것

√ 같은 뜻이면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

√ 어려운 한자말 사용을 피할 것

○ 인허가를 득하여야 ⇒ 인허가를 받아야

○ 족하다. ⇒ 충분하다.

○ 원고의 동의하에 ⇒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가 동의하여

○ -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고 보는 것이 옳다. 라고 보아야 한다.

√ 문장 안에서 가능하면 주어를 바꾸지 말 것. 주어가 자주 바뀌면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무리하게 주어를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

√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 밝혀 적는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보증금이고, 임차인에게는 임차보증금이다. ‘피고는 원고에

게 대여금 1,000,000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보다는 ‘피고는 원고에게 차
용금 1,000,000원을 갚은 의무가 있다’가 좋다.

√ 부정문을 사용하면 뜻이 더디게 전달되며, 부정문에 포괄하는 말 또는 관
형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거나 논리에 어긋나는 문장이 된다. 이
중부정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 24시간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 놓습니다.

○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노력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

○ A는 B처럼 건강하지 않다.

○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다. ⇨ 중요한 문제이다.

○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 않는 바는 아니다. ⇨ 누구나 행복을 바란다.

○ 원고는 담보취득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담보취득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또는 담보취득 의무를 위반하지 않
았습니다.

6 현대문장의 세 가지 방향으로, ① 쉽게, ② 짧게, ③ 보기 좋게를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장재성, '새 법률문장 시대를 열자' 1992. 4. 23, 법률신문 2117호, 11면

사. 문체는 간명하게, 문장은 짧게 끊어 쓸 것⁶⁾

“간결은 지혜의 형제”(셰익스피어)

“짧은 말에 많은 지혜를 머금게 하라”(소포클레스)

- √ 되도록 군더더기 없이, 한 문장이 100자를 넘지 않게, 기본어순으로, 이다/아니다로 분명하게 끝을 맺을 것. 겹가지와 군말을 숨아 낼 것(이발을 가지런히)
- √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문장은 짧을수록 전달효과가 크다. 긴 문장은 독자에게 긴 호흡을 요구하여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한다. 문장은 주어와 동사, 동사와 목적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해하기 쉬운데 긴 문장에서는 위 각 품사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 간명한 문장의 예: 오늘 축구를 했다. 나는 승용이랑 편을 먹고 명범이는 경열이랑 편을 먹었다. 오 대 삼으로 졌는데 참 억울하다. 그렇게지만 참 재미있었다. -- 일곱 살 난 아이의 일기(마치 현장을 보는 듯 생생하다).
- √ 관형어, 부사(어), 접속어는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것. 중복되는 표현도 삼가는 것이 좋다.
 - 내 고향은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이다. 그 곳은 단오절이면 봉산탈춤이 며칠이고 밤을 지새우는 곳이다. 말하자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는 그 봉산 인심이였다. 그리고 옆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재령평야는 나므릿별이라고 했다. 곧 먹고도 남는다는 풍요의 별판이였다.
 - ⇒ 내 고향은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단오절이면 봉산탈춤이 며칠이고 밤을 지새우는 곳,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는 그 봉산 인심. 옆으로 끝

없이 펼쳐지는 재령평야는 나므릿벌이라고 했다. 먹고도 남는다는 풍요의 별판이었다.

○ 우리 가족은 여름의 야영에 익숙해진 가족이다.

⇒ 우리 가족은 여름의 야영에 익숙해졌다.

√ 미사여구가 많으면 번지레한 글로 보이며, 지나친 강조도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깊게 하여 소재를 풍부히 할 것. 소재가 빈약하면 불필요한 수식어가 많아지게 된다.

○ 이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21세기의 푸른 창공을 향해 비상을 준비하는 우리 연구원 가족들의 지혜이다.

밑줄 부분은 없는 것이 낫다.

○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 참으로 안타깝다.

○ 피고들이 현지에서 실제 측량한 결과가 당연히 항공사진이나 도면의 결과 보다 정확성에서 우수하므로 ⇒ --- 정확하므로

○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매우 위법합니다.

⇒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 여러 개의 주어와 술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문장의 이해도가 떨어진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생각만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형사판결 주문 예:⁷⁾

7 박철, "판결서 글쓰기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민사실무연구회편,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4권 제392쪽에서 인용함.

1.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에, 50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에, 40일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4.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판결의 문장배열을 피고인 별로 나누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판결의 상대방인 피고인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형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문장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하는 데 그 목적지가 중요하듯이, 문장의 목적 곧 주제요, 둘째는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지에 이르는냐는 교통수단 곧 소재요, 그 다음으로 어디를 경유하고 어디서 쉬느냐는 문장 전개상의 구성이다.

⇒ 문장을 쓰는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로, 여행에서 그 목적지가 중요하듯이, 문장의 목적 곧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로, 목적지인 주제에 이르는 교통수단, 곧 문장의 ‘소재’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에 어디를 경유하고 어디서 쉬느냐 하는 문장 전개상의 구성이다.

√ 유의하여야 할 일상적 표현.

○ - 신청이 있는 때에는, - 사실로 인하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신청이 있으면, -사실로, - 그럼에도 로 줄여 쓰는 것이 좋다.

○ 다툼이 있던 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 다투던 중,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잘못이 있더라도 로 쓴다.

○ - 한 바,
문장이 길어지는 요인이 되는 아주 흔한 표현이다. 위와 같은 표현을 쓸
시점에서 전후 맥락을 점검하여 문장을 끊고 새 문장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괄호사용 시 유의사항

- (1) 가급적 괄호를 사용하지 말 것
 - (2) 괄호 안의 내용이 길지 않게 할 것(2) 괄호 안의 내용이 길지 않게 할 것
 - (3) 괄호 안에 마침표를 치지 말 것
 - (4) 새발톱점(‘ ’)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할 경우에 쓰고, 개발톱점(“ ”)은 직
접 인용부호로 씀
- 이 책이 ‘피에리아의 샘물’(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새로운 영감과 지식
이 깃들이게 한다는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이 책이, 새로운 영감과 지식을 깃들이게 한다는 ‘피에리아의 샘물’
(그리스 신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표현의 반복을 피할 것

√ 동일한 단어의 반복은 지루한 느낌을 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떤 역이든 주어만 주십시오.

⇒ 가능한 한, 어떤 역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 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범에게 개를 빌리는 것이다.
- ⇒ 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범에게 개를 빌리는 격이다.

√ 조사의 중복

- 나는 미국에서는 3년 전까지는 주말에는 책을 안 읽었다.
- ⇒ 내가 미국에 살 때 3년 전까지는, 주말에 책을 안 읽었다.
- 그가 정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 ⇒ 그가 정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 밝혀졌다.

√ ‘그러나’의 기능

‘그러나’는 부정역접과 강조역접 두 가지로 쓰인다.

문장은 짧아야 힘이 있다. 그러나 단문만이 능사는 아니다(부정역접).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거기엔 많은 함축이 있어야 한다(강조역접).

‘그러나’의 사용이 반복되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찾는 것이 좋다.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다만/하지만/그렇지만 등이 있다.

√ 불필요한 ‘의’: <별지 1, 1.나. (1)>참조

√ 피해야 할 중복표현들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크게 대별하면, 약 100명 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 찾아 보면 많이 있다. 경우에 따라 앞뒤가 모순되기도 한다.
 <예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의 하나이다.

√ ‘각’의 용례: 원고에게, 피고 A는 원을, 피고 B는 원을 각 지급하라.

√ 같은 내용을 표로도 나타내고 그림도 그리고 본문에 표의 내용을 낱낱이

풀어 쓰거나 같은 내용을 앞뒤에서 되풀이 하여 서술하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글의 방향과 문장의 연결관계

√ 정서적 의도의 방향⁸⁾

① 길동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못한다.

② 길동이는 운동은 못하는데 공부는 잘한다.

① 문장은 글쓴이의 긍정적 정서를, ② 문장은 부정적 정서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 긴장의 형성과 해소⁹⁾

① A는 나쁘다.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② A는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나쁘다.

미리 이유가 제시된 ②의 경우가 ①의 경우보다 문장의 긴장감이 떨어진다.

차. 너무 뼈대만 앙상한 문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설명이 필요한 사실관계나 법리는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살이 붙을 곳은 붙고, 빠질 곳은 빠져야 함

카. 문장 안에서 표시가 일관될 것(소외인)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앞 뒤 표시가 다르면 글이 무성의하게 느껴진다.

사소한 부주의가 글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게 된다.

〈예시〉 위 소외인, 김금동, 위 김금동

8 박철, 앞의 논문 393쪽

9 같은 논문 393쪽

타. 표준어, 맞춤법, 특히 띄어쓰기에 유의할 것

√ 항상 국어사전을 곁에 두고 확인할 것(특히 외래어 표기의 경우)

〈틀리기 쉬운 용례〉

감격해하다(X) ⇨ 감격하다(O).

감격하다는 자동사이므로 동사화 불필요.

삼가하여 주십시오(X) ⇨ 삼가 주십시오(O).

‘삼가다’가 동사이므로 ‘하다’가 붙을 수 없음. 반면 ‘감사하다’는 형용사로도 동사로도 쓰이므로 ‘하다’를 붙일 수 있음. ⇨ 감사해 하고 있다(O).

√ 띄어쓰기가 잘된 만큼 뜻의 전달이 명확해진다.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띄어쓰기 용례: 〈별지 2〉 참조

파. 용어를 정확히 구사할 것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단어(특히 추상명사)를 찾으면 문장이 짧아지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고 문장에 생기가 난다.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미가 동일한 경우 정서적 의미가 강화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다’로 얼버무리면 독자가 필자 대신 문장에 적합한 말을 찾아야 한다.

〈예시〉

○ 사실을 전제로 ⇨ 사실을 기초로(의견서 시작부분, 의뢰인이 확인하여 준 사실에 기초하는 경우 ‘전제로’ 보다는 ‘기초로’가 적절함)

○ 주차구획선을 넓게 그려 놓은 부분까지 ⇨ 주차구획선을 넓게 그어 놓은 부분까지

“하나의 사물을 지적하는 데는 단 하나의 가장 적절한 명사가,
 한 가지 동작을 표현하는 데는 단 하나의 가장 적절한 동사가,
 하나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는 단 하나의 가장 적절한 형용사가 있다.”

‘플로베르’의 一物一語說

하. 어색한 명사형 문장을 피할 것(외래어투)

- √ 어색한 명사형의 사용은 법률문장에서 흔히 보는 부적절한 표현의 예이다. 동일한 표현이라면 『체언 + 용언』의 단순한 형태가 이해하기 쉽고 간명하다.
- √ 명사형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명사형 사용으로 문장이 간결하게 되는 경우와 불필요한 수식어가 되는 경우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달에서의 산책을 칼라로 보자. ⇨ 달에서 산책하는 장면을 컬러로 보자.
 - 가벼운 마음이다. ⇨ 마음이 가볍다.
 - 산의 푸르름도 아름다웠다. ⇨ 산이 푸르러 아름다웠다.
 - 원고가 실제 점용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 ⇨ 원고의 실제 점용부분으로 인정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명사형 사용의 적절한 예)

거. 요건사실과 무관한 단어 특히 불필요한 동사를 피할 것

- 원고와 피고는 2005. 1.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행운복덕방에 서) (만나) 중기 10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너. 가능하면 법률용어(법전)를 사용할 것

국어사전과 법전은 법률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이다.

더. 인용은 정확하게 할 것

교과서나 판결에서 인용한 문장은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좋다.

러. 조사의 사용에 유념할 것

√ 한국어는 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조사의 사용에 따라 사실의 진술인지 의견의 진술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¹⁰⁾ 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의 차이.

√ 문장이 여러 문단으로 이어질 경우 문장의 연결조사에 유의할 것(고머타령). 문장은 읽는 사람이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타. 체제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다듬을 것

페이지의 끝에서 큰 제목이 시작되는 것 등을 피해야 한다. 문서에는 항상 작성자의 정성이 배어 있어야 한다.

10 김훈,

조사의 사용에 관한 작가 김훈의 의견. “한국어는 조사 하나에 의해 의견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조사를 안 좋아해요. 한국말의 조사는 나한테는 너무 어렵고 다루기가 힘들어요. 조사는 한 음절인데 그게 몇 개 안돼요. 대 여섯 개밖에 안 되는 이 한 음절을 이리저리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서양말은 조사가 없잖아요. …… 그러니까 한국어로 글을 읽는다는 것, 한국어로 사유를 한다는 것은 조사를 읽고, 조사를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읽지 않고는 한국말은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한국어의 모든 언어적 장치, 문법의 구조, 사유의 전개는 조사의 매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말의 운명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그 조사는 가난하고 매우 모호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모호함이 우리 모국어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호한 조사 안에 많은 자유의 여백이 있고, 많은 창조의 공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한테는 저런 모호한 것들이 어렵고 힘들습니다. 나는 지금도 조사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김훈, “바다의 기별” III 말과 사물, 150쪽에서 인용」

2. 좋은 문장과 나쁜 문장

가. 좋은 문장의 특징

- ◎ 구체적인 설명
- ◎ 간결한 문체
- ◎ 단순하고 명쾌한 병치문맥
- ◎ 핵심이 나타나는 도입부(처음 석 줄이 핵심)
- ◎ 단정한 마무리(마지막 두 줄이 전체를 살린다)
- ◎ 정확한 수식어의 사용
- ◎ 선명한 글 꼬리
- ◎ 정확한 고유명사의 사용 및 호칭
- ◎ 정확한 숫자 표기
- ◎ 적절한 각주의 사용¹¹⁾

나. 나쁜 문장에 보이는 표현들

- ◎ 여기저기 박혀 있는 접속어
- ◎ 지루하게 반복되는 어휘
- ◎ 애매한 지시어
- ◎ 자꾸 겹치는 조사
- ◎ 군살 붙은 문장
- ◎ 질질 늘어지는 괄호 안의 설명

11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1. 표현 면에서, 쉬운 낱말과 구문, 주지(主旨가 분명하고 앞에 놓여 있으며(두괄식), 단락의 굵기가 분명하고, 그 이름세가 선명하며, 긴 수식어나 종속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2. 표기면에서, 구두점의 표기가 친절하고, 시각적으로 단락이 알맞게 설정되어야 하며, 문자·기호·그림·도표 등 변화와 다양성이 깃들어 있고, 소재목으로 주제를 먼저 보이고, 번호를 달아 독자를 배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같은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장재성, 앞의 글

- ◎ 주체가 없는 피동형
- ◎ 힘없이 길기만 한 문장
- ◎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담긴 문장
- ◎ 긍정인지 부정인지 불분명한 표현
- ◎ 뜻이 모호한 ‘그러나’
- ◎ 국적 없는 번역 투 표현
- ◎ 한 문단에서 세 번 이상 등장하는 ‘의’

APPENDIX

별지 1 -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거나 어색한 표현

별지 2 - 올바른 띄어쓰기 용례

별지 3 - 법률문서 작성예(준비서면, 판결문)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거나 어색한 표현

- 별지 1 -

1. 일본어 투

가. 낱말

기(既) 발표된 ⇨ 미리 발표된

생산고 ⇨ 생산량/생산액

수입선 ⇨ 수입시장

기관수 ⇨ 기관사

합목적적 ⇨ 목적에 맞는

가건물 ⇨ 임시 건물

입장 ⇨ 처지

2부 이자 ⇨ 두 푼 이자

유창혁이 위빈보다 상수이다(우리말).

그 사람은 바둑의 상수이다(일본말).

사람인 이상(일본어) ⇨ 사람이니만큼

문제임과 동시에 ⇨ 문제이고 아울러

무엇은 무엇에 다름 아니다. 다름아니라(○), 다름없다(○). 다름 아니다(?).

소론, 일웅 (논지)

나. -에서의, 예로의, (으)로서의, (으)로부터의, 에게서, 보다,

-에 있어서, -의, -과의, -에의, -으로의

위와 같은 표현의 적절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의’를 줄이자

우리말 체언은 관형사적으로도 잘 쓰이니 ‘의’가 빠져야 우리말스러운 때가

많다. 우리 글은 띄어쓰기가 있어 사이사이마다 노(の)가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힘든 일본 글과 다르다.

〈예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 자기 소유인 물건, 자기 소유 물건

독도는 우리의 땅 ⇨ 독도는 우리 땅

하나의 민족 ⇨ 하나인 민족

최상의 도료 ⇨ 가장 좋은 도료

당신과 나의 사이에 ⇨ 당신과 나 사이에

나의 살던 고향 ⇨ 내가 살던 고향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국군, 우리의 법원 ⇨ 우리 소원, 우리 국군, 우리 법원

병과 정과의 사이에 ⇨ 병과 정 사이에

수출품의 주요한 것은 ⇨ 주요한 수출품은

민법에 있어서의 ⇨ 민법에서

통일에의 열망 ⇨ 통일에 대한 열망

건조물에의 방화 ⇨ 건조물방화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법관에로의 길 ⇨ 법관이 되는 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 억압에서 자유를

인간으로서의 자유 ⇨ 인간이 누릴 자유

법관에게서의 청렴은 매우 소중한 덕목이다. ⇨ 청렴은 법관에게 매우 소중한
덕목이다.

형법에 의하여 ⇨ 형법에 따라

이론에 의하면 ⇨ 이론에 따르면

폭력에 의해 진압하고 ⇨ 폭력으로 진압하고

식민사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 식민사관에 지배당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 ⇨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예비 단계에 있어서는 처벌될 수 없다. ⇨ 예비 단계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인간에게 있어 언어의 존재는 ⇨ 인간에게 언어의 존재는
 그 본질에 있어서 ⇨ 그 본질에서는
 나는 언어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 ⇨ 나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 전자는 일종의 강조화법이나 문장이 늘어짐

농산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농산물을 수출하려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감귤 값이 떨어진 원인은 생산이 과잉된 데에 있다.
 ⇨ 감귤이 과잉생산되어서, 값이 떨어졌다.

기술발전의 결과로 ⇨ 기술이 발전하여

다. られる, される 투의 일본식 표현

√ 원래 우리말은 주어가 숨는 일은 있어도 수동, 사역을 함부로 쓰지 않았음.

〈예시〉

개업규제가 폐지돼야 한다 ⇨ 개업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법원조직법도 개정돼야 옳다 ⇨ 법원조직법도 개정해야 옳다.
 하위 법규에서 법률 목적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 구체화하고 있다.
 채권과 채무를 상계시키면 ⇨ 상계하면
 ~시대에는 농업이 발달되어 왔다. ⇨ 농업이 발달하였다.
 재산을 형에게 독차지 당하였다. ⇨ 형이 재산을 독차지하였다.
 〈표3〉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 〈표3〉에서 보듯
 나는 유학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 나는 유학가고 싶다.
 굽혀진 숲

아래는 노테아루(のである) 증후군이라 할 만하다.

~ 라고 보여진다 할 것이다.

반성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강간한 것이다. ⇨ 피고인이 강간하였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할 것이다.

라. - 있다. - 주다, 짓, 수

‘- 있다, - 주다, 수’는 자연스런 우리 말에 어울리지 않는다.

‘가고 있다, 보고 있다, 오고 있다, 하고 있다’ ⇨ ‘간다, 본다, 온다, 한다’

‘임대하여 주고, 등기하여 주고, 도급을 주고,

⇨ ‘임대하고, 등기하고, 도급하고’

‘몸에 좋은 것이 시장에 잘 팔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 ‘몸에 좋다 하면 무엇이든 다 잘 팔린다’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광우병에 걸릴 지도 모릅니다’

마. 또는, 및

√ 이 말들도 일본식 어법이다.

오늘은 비 또는 눈이 오겠다. ⇨ 오늘은 비나 눈이 오겠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가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는

⇨ 국가가 농업과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는

바. - 적(的), -들

√ 우리 말은 명사와 명사의 결합력이 뛰어나서 꼭 ‘적(的)’에 기대지 않고

그냥 명사만 앞에 세워도 관형어 역할을 한다.

필수적 요소 ⇨ 필수 요소 돌발적 사고 ⇨ 돌발 사고

야만적인 짓 ⇨ 야만스러운 짓 굴욕적인 패배 ⇨ 굴욕스러운 패배

자극적인 발언 ⇨ 자극하는 발언

√ 영어의 복수명사는 무조건 들'을 붙여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요즘 손님들이 너무 많다. ⇨ 요즘 손님이 너무 많다.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2. 관계대명사, 동명사, 부정사 투 문장 - 영어식 표현

<예시>

왕은 노래를 잘 부르는 세 명의 딸을 가지고 있다.

⇨ 왕은 딸 셋을 두었는데, 셋 다 노래를 잘 부른다.

외환 보유액이 한때 50억 달러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 외환 보유액이 한때 50억 달러까지 내려갔다. 강조부분이 달라짐

곡물 생산량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곡물 생산량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유효한 합의로서 구속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합의서(갑 제1호증)의 효력

√ 흔히 쓰는 표현이나 주어 앞에 너무 긴 관형구가 붙어 우리 말로는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을 찌러보는 데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때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켜려보는 데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때렸다.

3. 틀리기 쉬운 용례

√ 시제가 됐든 존칭이 됐든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쓰는 것이 우리말답다.

밥도 먹었고 떡도 먹었고 김치국도 먹었다.

⇒ 밥도 먹고 떡도 먹고 김치국도 먹었다.

단위에 오르셔서 신년사를 읽기 시작하셨다.

⇒ 단위에 올라 신년사를 읽기 시작하셨다.

√ 늦어도, 적어도 등의 구별에 유의할 것

빨라도 4주 후 ⇒ 일러도 4주 후

√ 으로서 -- 자격, 으로써 -- 수단

√ ‘것’과 ‘기’의 쓰임새

주어가 생략되거나 막연한 사람이 동작하는 문장에서 문제됨

〈예시〉

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 남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것은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노는 것도 힘들다.

⇒ 일하기도 힘들지만 놀기도 힘들다.

환경을 살리자는 것일 것이다.

⇒ 환경을 살리자는 의도일 것이다. 살리자는 의도인 듯하다.

너는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어 보았느냐?

⇒ 너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 보았느냐?

군 단위 업무가 많은 것은 변함이 없다.

⇒ 군 단위 업무가 변함없이 많다.

√ 문장 끝을 '것이다'로 맺고, 영어의 관계대명사, 부정사, 동명사식의 '것'을
여기 저기 쓰게 되면 '것'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전에 나타난 어색한 표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전통으로 빛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헌법 위반 여부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 본질적 내용은 침
해할 수 없다. (있으며 ⇨ 있으나가 정확한 표현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누구는 무엇이며, 무엇이다.’가 어법에 맞고 ‘누구는 무엇이며, 어찌한다.’
는 어색함)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재의
에 붙이고 ⇨ 이의서를 붙여, 재의에 부치고

올바른 띄어쓰기 용례

- 별지 2 -

1. 원칙

모든 단어는 띄어 쓰고, 조사, 접두사, 접미사, 어미는 붙여 쓴다. 보조용언은 띄어 씀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 의존명사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씀이 원칙이나,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2. 용례

○ 100만 원, 1,000,000원

○ 원고등은과 원고들은, 원고 등은의 비교

단순히 복수를 나타내는 ‘등’은 접미사로서 붙여 쓰고,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뜻을 나타내는 ‘등’은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 ‘원고 등은’ 은 원고 이외에 피고나 참가인 등 관련 당사자를 총칭할 때 사용한다.

○ 전문용어, 수식어와 명사가 함께 굳어져 별도의 뜻을 갖는 경우

⇒ 산토끼와 산 토끼, 큰 소리와 큰소리

○ 이유있다(X) 이유 있다(0) 다만 하나의 용언으로 굳어진 경우 붙여 쓴다.

⇒ 어이없는, 밤낮없이

○ -- 바

어미가 되면 붙이고, 의존명사인 경우 띄운다.

하였던 것인바, 추징당한 바 있는 사실, 뜻한 바 이루소서

유사한 용례 : ‘데’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여기에서의 ‘데’는 경우, 점 등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임.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기재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어미로 사용된 경우임

양자는 끝에 조사가 올 수 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 법령이름도 적당히 단위 별로 띄어 쓸 것

○ 이, 그, 저

관형사로서 띄어 쓸 것. 이 사람, 그 밖에, 그 분과 그분(특별한 관계), 저 곳

○ 상, 중, 하

접미사는 붙이고 명사는 띄운다.

이 사건 토지 상에 축조된 건물은 토지상 문제로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의 책임하에 해면 하의 포락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송 심리 중에는 병합된 여러 소송 중 피고 본인이 소송중인 사건에 관하여만 진술하시오.

좀 더 산뜻한 우리말 ⇨ 토지 위에, 해면 아래의, 소송 가운데.

○ ‘밖’은 명사로서 띄어 쓰나 ‘밖에’는 조사로서 통째로 붙여 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 뿐, 만큼, 만한, 대로 등

용언 밑에 쓰이면 의존명사 또는 보조용언(띄고), 체언 아래 쓰이면 조사 또는 접미사가 된다(붙인다).

비자금 뉴스로 허탈할 뿐이다. 과연 전직 대통령뿐일까?

먹을 만큼 먹어야지, 그 사람만큼 먹어야

그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만한 배짱이 어디 있을라고

너는 너대로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 편, 측, 쪽

특별히 접미사로 된 경우(맞은편, 아군측, 반대쪽 등)를 제외하고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제(諸)는 관형사로서 띄어 쓰고(제 문제, 제 비용, 제반 문제), 숫자 앞에 쓰여 차례를 나타내는 제는 붙여 쓴다. (제7차 변론기일)

○ 1992. 3. 25. ⇒ 숫자 사이를 띄움

○ 88누44 대법원 2000. 1. 11. 선고 99마33 판결

○ 갑 제1호증의 1, 2

○ 제124조의2

○ 연 3할 6푼 5리

○ 금 4,00,000,000원

○ 4천억 원

○ 십표의 종류 반점(.), 가운데점(·), 쌍점(:), 빗금(/)

겹낫표, 낫표는 세로쓰기의 경우에만 가로쓰기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만 사용

<예시 1-1>

준비서면¹²⁾

사 건 2013가단123456 보증채무금

원 고 주식회사 OO은행

피 고 0000 금융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담보취득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가. 문언의 내용상 원고에게 부여된 담보취득 의무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규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의 문언에서 명백히 원고의 담보취득 의무가 발생하는 건물 또는 시점을 ‘준공된 후 건물, 건물 준공 즉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의무는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며, 준공 이전의 미완성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이 준비서면의 기초가 된 분쟁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주택건설업자가 원고로부터 주택건설자금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이를 보증함, 주택건설업자가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면책주장을 함
가. 원고 은행이 대출을 함에 있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 규정된 담보취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보증사고 발생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및 추가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항에 대하여 대출 당시 담보목적물인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담보취득절차를 밟을 수 없었음을, 나. 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음을 각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규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에서 규정한 ‘준공’의 의미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고 하면서 ‘준공’의 의미를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의 사전상 의미는 ‘공사를 다 마친 상태’이므로, 그 의미상 명확하게 ‘공사를 다 마친 상태가 아니라 미완성이지만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규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에서 규정한 ‘준공(공사를 다 마친 상태)’이라는 문언의 해석을, 그 문언의 외연상의 의미를 넘어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의 주장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준공’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준공’이라는 용어보다 오히려 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준공’이라는 용어는 ‘공사를 다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으로 법률상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거나 법률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공사를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한데 반해,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판례도 추상적인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피고는 ‘준공’이라는 용어가 객관적 기준이 있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어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보다 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및 신용보증서상 약정의 목적(취지)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및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서 이 사건 담보권 취득의 약정을 규정한 기본적 취지가 피고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담보권 취득 의무를 부과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권 취득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결국 원·피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 원고의 담보권 취득 의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담보권 취득 의무의 내용 및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무한정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위 약정의 취지가 단지 피고의 구상권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 조항의 해석은 피고의 구상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해도 무방한 것처럼 주장하나, 위 약정은 한편으로는 피고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담보권 취득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준공’의 의미를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원고는 2002. 7. 1.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도 미등기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의 설정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나(2013. 4. 16.자 피고 준비서면 5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관할 관청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할 관청이 잘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위 피고 준

비서면 11면에서 피고도 이를 인정).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 취득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는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위 주택금융 신용보증약관 및 신용보증서상의 ‘준공’의 의미를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형태와 효용을 갖춘 때로 약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2012. 8. 14.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제출된 판결들은 당해 건물이 비록 법률상 준공, 즉 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사실상 완공이 된 상태라면 준공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주채권자인 은행에게 담보취득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해석은 준공이라는 용어의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는 2012. 4. 16.자 준비서면 9면에서 원고가 담보권 취득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62016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면, 당해 아파트는 주채무자의 부도 당시 이미 사실상 완공된 상태로 분양자들도 일부 입주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이 주채권자인 은행에게 담보권 취득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최종 판단은 비록 주채권자인 은행에게 담보권 취득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은 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위 판결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원고는 담보취득 의무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준공(또는 사실상 준공)된 후의 건물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취득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는 준공 이전의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취득할 의무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전제한 후, ①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 ② 민사집행법의 개정 작업은 1995. 4.경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전문금융기관인 원고가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충분히 미등기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 ③ 신용보증 사고 후 약 2년 동안 소유권보존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담보권 취득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준공 이전의 미완성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① 민사집행법 개정 이전에 관할 관청의 협조를 얻어 미등기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 받는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진행 정도가 사실상 완공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였으며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주도 전혀 없었다는 점, ③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시, 구, 읍, 면의 협조를 얻어 건축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준공되어 입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 건축 중인 미완성의 건물에 대해서 시, 구, 읍, 면이 건축물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활발히 이용되는 것으로 볼 때 원고가 비록 금융기관이기는 하나 6개월 기간 안에 관련 법규정의 개정 상황을 파악하여 개정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에는 매우 짧다는 점, ⑤ 원고의 담보권 취득의 주의의무 정도는 이 사건 주택신용보증이 체결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 이후의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원고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⑥ 주채무자의 부도 이후 또는 민사집행법 개정 전후, 피고도 원고에게 담보권 취득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증부대출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000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주체 명의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원고가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체 명의를 인수한 제3자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9조 제12호(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이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및 추가근저당권설정 의무의 존부

피고는 면책 주장의 전제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사업주체 명의를 이전할 수 없도록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피고는 주채무자의 사업주체 명의를 인수한 제3자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 약정도 체결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체 명의를 인수자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지 여부는 피고의 보증채무 책임의 유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주체 명의를 양도에 있어 원고는 사업주체 명의를 인수자에게 대출금 채무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관련 규정으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약정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국민주택 기금 업무편람, 국민주택기금 사후관리업무 매뉴얼 등 어느 곳에서도 피고의 주장처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사업주체 명의를 이전할 수 없도록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원고에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비슷한 취지의 규정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피고도 2012. 4.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관련 규

정을 기술하기는 하였지만, 위 의무의 발생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의 발생근거로, 부도사업장의 사업주체가 원고의 동의 없이 양도되게 되면 장차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추가근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위 준비서면 17면 하단~18면 상단).

하지만 주채무자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채권자의 동의 없는 주채무자의 임의적 사업명의 양도를 방지할 의무가 주채권자에게 발생한다고 불법률상 근거가 없고, 사실상 주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임의적 양도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주채권자인 원고를 무시하고 또는 원고에게 비밀로 하여 사업명의를 양도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대로라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채권자인 원고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무조건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주채권자인 원고에게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원고의 의무 내지 보증인인 피고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불법률적, 실제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3. 5. .

원고의 소송대리인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 단독 귀중

준비서면

사 건 2013가단123456 보증채무금
원 고 주식회사 OO은행
피 고 0000 금융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담보취득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가. 약정상 원고에게 부여된 담보취득의무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및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 특약은 원고의 담보취득 의무의 대상을 ‘준공된 후 건물’로, 그 시점을 ‘건물 준공 즉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준공’의 의미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그 의미를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준공’의 사전적 의미는 ‘공사를 다 마친 상태’이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건축법상 용어일 뿐 아니라 그 통상적 용례는 오히려 ‘공사를 다 마친 것을 공적으로 확인한 상태(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의미가 분명한 용어를 처분문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정당한 의사해석방법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가 담보취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그 개념 자체

가 불명확하므로 ‘준공’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2. 8. 14.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결들은 당해 건물이 비록 법률상 준공, 즉 사용승인 이전이라도 사실상 완공 되었으면 준공과 동일하게 보아 채권자 은행에 담보취득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준공의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 아닙니다.

피고가 2012. 4. 16.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62016 판결 역시 주채무자의 부도 당시 목적물인 아파트가 사실상 완공되어 일부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자 은행에 담보취득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나. 2002. 7. 1. 민사소송법 개정 전 미등기건물에 관한 등기실무

원고는 2002. 7. 1.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도 미등기건물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제한 없이 가능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나 (2012. 4. 16.자 피고 준비서면 5면), 실무상 관할 관청의 비협조로 미등기건물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통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위 피고 준비서면 11)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 취득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는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담보취득의무 발생시점을 ‘준공’ 이전 단계로 약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의 담보취득의무 위반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체적인 사정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담보취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들로, ① 관할 관

13 <예시 1-1> 서면을 퇴고작업을 거쳐 수정한 서면임.

청의 허가를 얻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 ② 민사집행법의 개정 작업은 1995. 4.경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전문금융기관인 원고는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충분히 미등기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 ③ 원고가 신용보증 사고 후 약 2년 동안 소유권보존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민사집행법 개정 이전에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협조를 얻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데다가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시, 구, 읍, 면의 협조를 얻어 건축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입주민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축 중인 미완성의 건물에 대해 건축물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사실상 어려웠고, ② 피고의 부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진행 정도가 사실상 완공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고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주도 전혀 없었으며, ③ 원고의 담보취득의무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들의 약정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개정 이후 당초의 약정자체가 변경되지도 않았고, ④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른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도 6개월의 기간 안에 관련 법규정의 개정 상황 및 목적물의 변동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정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⑤ 주채무자 부도 이후 또는 민사집행법 개정 전후,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담보권 취득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3. 원고는 보증부대출금의 회수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000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주체 명의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원고가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어야 하고, 사업주체 명의를 인수한 제3자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9조 제12호(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이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합니다.

나. 피고 주장의 당부

먼저 원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치분 및 추가근저당권설정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피고가 관련 규정으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약정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국민주택 기금 업무편람, 국민주택기금 사후관리업무 매뉴얼 등 어디에도 피고의 주장처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사업주체 명의를 이전 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치분을 신청하거나 추가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고 스스로도 위 규정들을 위와 같은 의무의 직접적인 발생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부도사업장의 사업주체인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양도하게 되면 장차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추가근저당권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을 뿐입니다(위 준비서면 17면 하단~18면 상단).

그러나 채무자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사실상 그와 같은 채무자의 양도행위를 채권자가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언제나 주채무자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고의 대출금 회수의무 내지는 보증인의 면책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는 주채무자의 사업주체 명의를 인수한 제3자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도록 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수인이 대출금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지 여부는 피고의 보증책임 유무와 무관할 뿐 아니라 사업이 양도되는 경우 원고는 사업양수인에게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것을 실무상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치분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대출금 회수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2013. 5. .

원고 소송대리인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 단독 귀중

<예시 2-1>¹⁴⁾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판결
(종회회원확인) 중 일부

(3)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4 아래 내용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판결(종회회원확인) 중 중간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예시 2-2>는 국내 어문학자가 같은 판결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자 한 내용이며, <예시 2-3>은 같은 취지를 구현하되, 법률문장의 관점에서 수정해 본 내용이다.

마. 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이와 같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의 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종중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바,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그 동안 종중 구성원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인식 변화와 아울러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는 종래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가 지향하는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다만, 대법원이 위와 같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결국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배제하여 당해 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다투면서 자신들이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저히 정의에 반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피고 종회의 회원(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한하여는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우선,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종원(종회의 회원, 이하 :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이제까지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왔다. 더 자세히 말하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묘를 지키고 보호하며 제사를 받들어 모시고, 또한 종원 서로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이다. 그리고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한다. 이것은 여러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출생시의 성별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이제까지의 관습법은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마. 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견해의 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종중제도의 바탕을 바꾸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종중 구성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전체 법질

서의 변화로 인한 이제까지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 질서가 지향하는 남녀 평등의 이념에 맞지 않음으로써, 그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종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만 적용되는 것이 옳다.

다만, 대법원이 이제까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은 관습법의 효력을 배제하여 이번 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관습법의 효력에 반대 의견을 내어, 피고 종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대하여 변경된 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바탕에 어긋난다. 또한 뚜렷이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종원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 사건 청구에 한하여는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소급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 2-3〉

(3)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앞에서 보듯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많이 흔들리거나 약화된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가 인간의 존엄과 만인 평등이라는 인류보편적 이념에 따라 여성 차별 관습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종중은 공동선조를 두고 있는 후손이 선조의 묘를 보호하고 제사를 받들어 모시며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 이제까지 관습이 공동선조 후손 중 성년 남자에게만 종원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와 같은 우리의 변화된 법 질서 및 종중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마. 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위와 같이 변경된 대법원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원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종중제도 근간인 종원 자격에 관한 지금까지 견해를 바꾸는 것은 그에 관한 종래 관습법이 더 이상 우리 법질서가 지향하는 남녀평등 이념에 맞지 않게 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변경된 대법원 견해를 소급적용하는 경우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성되어 온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게 되어 당사자의 신뢰보호와 그에 따

른 법적 안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가 크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종래 관습법의 효력을 다투면서 피고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원고들 청구가 정당한지는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옳다. 만일 이 사건에 대하여서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나고 정의에도 뚜렷이 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를 적용하기로 한다.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1판 1쇄 발행: 2012년 4월 24일

3판 1쇄 발행: 2014년 4월 30일

정리: 임승순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화우연수원장

제작: 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
YOON&YANG